

##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

서강대 신문방송학 교수  
유 재 천

언론인은 모든 곳에서 진실한 직업으로 인식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규범과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 1. 언론과 인권

언론과 인권의 관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기본인권의 하나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의 보장과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언론의 책임보다 자유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른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심과제가 되는 셈이다.

반면 또 다른 하나의 과제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을 위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전개되어 왔다. 말하자면 (무엇 무엇을 위한 자유)가 중심과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언론이 다른 기본권을 지원하느냐 혹은 안하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언론활동을 분석하게 된다.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과제의 범주에 속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대부분의 언론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는 주로 기본권 가운데서도 인격권에 한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언론이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했거나 혹은 침해했는가에 관심을 모아왔다. 그 결과 언론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국한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를 인격권에 한정시켜 보는 것은 협의의 관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권의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인격권만이 아닌 다른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다. 「세계의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기본권 전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다. 언론기본권 제 3 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인권의 개념을 기본권 전반으로 보고 언론이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조항에서 명백히 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모든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마땅히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 모든 인권을 언론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침해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한다.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를 보다 광의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언론이 참다운 본래의 구실을 다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할 시각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과제인 언론과 인권침해를 언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한정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 **언론이 타인의 명예 ·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요약된다. 우리 헌법은 제 9 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 제 16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 17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조항은 모두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제 20 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일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기본법도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제 3 조에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 능력 기타 사회성원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에 관한 사회적인 적극평가이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명예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사항이 권한없이 공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개인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면 인격적 이익의 총체가 되며, 협의로 파악할 때는 ①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 ② 사적영역의 존중에 대한 권리 ③ 인격적인 감정세계가 존중될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이해된다. ① 개인으로서의 정신적 · 심리적 본질 또는 성명 초상 · 혈통 등 개인의 동일성의 표상에 대한

타인의 침입과 공개에 저항하고 그 이용과 공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힘  
 ② 서신 전신 · 전화 등에 의한 개인의 사적 정보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감시에  
 저항하고, 그 공개와 폭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③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 즉 자체재산 · 문서 장서 등에 대한 물리적 및 기타의 침입에 대한 자유 등을  
 프라이버시와 권리에 포함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도 협의의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대체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에 대한 권리와 미분화된 채 혼용되어 온  
 경향이다. 언론기본법에서도 그렇거니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 그 법정에서 이 두  
 권리의 개념은 서로 혼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두 권리에 대한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 권리에 대한 침해도 분리되어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망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훼손이란 개인에 대한 존경 ·  
 경의신용 등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야기시키는 것, 또는 개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란  
 ① 개인을 공공연한 증오 · 비방 · 혐오 · 모욕적 언동 · 악평 · 경멸 · 조롱 · 배척 · 강등 ·  
 창피 등에 노출시키는 말, ②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을 갖도록 유발하는 말 ③ 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신용을 박탈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뉴욕주 형법은 명예훼손을 단순한 말보다는 문서 · 인쇄물 ·  
 초상 · 인쇄된 그림(사진) · 싸인 등에 의한 악의있는 공표로서 ① 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증오 · 비방 · 경멸 · 조롱에 노출시키는 것 ②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원인 ③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 또는 협동이나 교제관계에 손상을  
 초래하는 성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여섯 가지로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한다. ① 명예의  
 주체인 사람, 즉 피해자의 특정성 또는 특정 가능성 ② 행위의 공연성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사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③ 사실의 적시로서 적시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특질이면 무엇이든 전부 해당된다. 다만 그 사실을 형법 제 310 조의 사실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④ 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방법으로 구두이건 문서이건 제 3 자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 표명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침해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된다. ⑥ 고의의 여부로서 어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TV 기타 출판물이나 전파매체를 통해 전기한 사실을 공언히 적시하였을 때에는 성립되며, 고의성이 개재되었을 때는 물론 성립된다. 한편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일반적 방법에 의해 침해된다고 한다. ① 개인의 사적인 사사를 당혹케 하는 공적 폭로 ② 성명·초상의 남용 ③ 사사의 왜곡된 공표 ④ 사적 생활, 독거, 은둔생활이나 정밀에의 침입 등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각각 오로지 공고의 이익에 관하거나 공적 인사에 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보도성향과 인권침해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61년부터 80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결정을 내린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모든 결정사례마다 그것이 신문윤리조항 및 동 실천요강의 어느 장 어느 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대상이 된 기사의 어떤 점이 강령이나 실천요강에 배치된다는 것도 지적해 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이 분석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결정된 사례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가를 우선 살펴보았다. 신문윤리조항보다 동 실천요강의 위반사례를 분석한 까닭은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이유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신문기사의 어떤 오류가 명예훼손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했다.

###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 위반이 가장 많아

지난 20년 동안 신문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명예훼손 사례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어느 항목을 위배했는가를 년도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1>이다. <표 1>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명예훼손으로 결정된 사례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실천요강의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에

저촉된 사례였다. 특히 「보도와 평론의 태도」 장의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결정된 사례는 72년의 유신체제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위반사례 가운데서는 제 4항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된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 1항 「공공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격이나 저열할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와 제 2항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년도별 신문윤리실천요강 항목별 저촉건수 (명예훼손 부문)

| 년도                 |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
| 보도와<br>평론의<br>태도   | 1항 | 1  | 1  |    | 1  |    |    | 1  |    |    |    |    |    |    |    |    |    |    |    |    |    |
|                    | 2항 | 1  | 1  |    | 2  | 5  | 4  | 2  | 14 |    |    | 1  | 2  |    |    |    |    |    |    |    |    |
|                    | 3항 | 2  |    | 1  | 3  | 5  |    | 1  | 15 | 2  |    | 2  | 2  |    |    |    | 1  | 1  |    |    |    |
|                    | 4항 |    |    |    |    |    |    |    |    |    |    |    |    |    |    |    |    |    |    |    |    |
|                    | 5항 | 2  | 2  | 1  | 4  | 4  |    | 6  | 9  | 3  | 1  | 1  | 1  |    |    | 1  |    |    |    |    |    |
|                    | 소계 | 6  | 4  | 2  | 10 | 14 | 4  | 10 | 38 | 5  | 1  | 4  | 5  |    |    | 1  | 1  | 1  |    |    |    |
| 독립<br>성            | 1항 |    |    |    |    |    | 1  |    |    |    |    |    |    |    |    |    |    |    |    |    |    |
|                    | 2항 |    |    |    |    | 2  | 1  | 2  |    | 1  |    |    |    | 1  |    |    |    |    | 1  |    |    |
|                    | 3항 |    |    |    |    |    |    |    |    | 1  |    | 1  |    | 1  |    |    |    |    |    |    |    |
|                    | 4항 |    |    |    | 2  |    |    | 1  |    |    | 1  |    |    |    |    |    |    |    |    |    |    |
|                    | 소계 |    |    |    | 2  | 2  | 2  | 3  |    | 2  | 1  | 1  |    | 2  |    |    |    |    |    |    |    |
| 타인의<br>명예와<br>자유   | 1항 | 2  | 2  | 3  | 4  | 12 | 9  | 15 | 20 | 21 | 16 | 7  |    | 5  | 1  |    |    |    | 1  |    |    |
|                    | 2항 |    | 1  |    | 1  | 2  |    | 2  | 3  | 3  | 5  | 5  |    | 22 | 27 | 21 | 14 | 6  | 9  | 22 | 9  |
|                    | 3항 |    |    |    |    | 1  |    | 1  |    | 1  | 3  |    |    |    |    |    |    |    |    |    |    |
|                    | 4항 | 1  |    |    |    | 2  | 37 | 22 | 12 | 33 | 7  | 13 | 2  | 52 | 29 | 14 | 41 | 23 | 24 | 15 | 4  |
|                    | 5항 | 1  |    |    |    |    | 1  | 1  | 5  | 2  |    | 1  | 1  | 2  |    |    | 1  |    |    |    |    |
|                    | 소계 | 4  | 3  | 3  | 5  | 17 | 47 | 41 | 40 | 60 | 31 | 26 | 1  | 81 | 57 | 35 | 57 | 29 | 33 | 37 | 13 |
| 품<br>격             | 1항 |    |    |    | 1  | 2  |    |    |    |    |    |    | 5  |    |    |    |    |    |    |    |    |
|                    | 2항 |    |    |    |    |    |    |    |    |    |    |    | 5  |    |    |    |    |    |    |    |    |
|                    | 3항 |    |    |    |    | 1  |    | 1  |    |    |    |    | 14 |    |    |    |    |    |    |    |    |
|                    | 4항 |    |    |    |    |    |    |    |    |    |    |    |    |    |    |    |    |    |    |    |    |
|                    | 5항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1  | 3  |    | 1  |    |    |    |    |    |    |    |    |    |    |    |    |    |
| 선량한 용의자<br>보호 보도기준 |    |    |    |    |    |    |    |    |    |    | 7  |    |    |    |    |    | 1  |    |    |    |    |
| 계                  |    | 10 | 7  | 5  | 18 | 36 | 53 | 55 | 78 | 67 | 33 | 38 | 19 | 83 | 58 | 36 | 59 | 30 | 33 | 37 | 13 |

1. 이 표는 명예훼손으로 「注意」이상의 決定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것임.

2. 이 표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개의 신문사의 명예훼손 사례를 한데 묶어 決定을 한 경우 각각의 신문사를 각기 하나의 단위로 계산함.

“예” 決定 969호처럼 연합통신·강원일보·부산일보 등 3개사의 명예훼손을 한데 묶은 경우 각사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함.

② 하나의 決定속에 2개항목 이상의 실천요강 저촉이 지적된 경우 이를 각각 하나의 계산단위로 취급했다.

1. 이 표는 명예훼손으로 「주의」 이상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것임.

2. 이 표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개의 신문사의 명예훼손 사례를 한데 묶어 결정을 한 경우 각각의 신문사를 각기 하나의 단위로 계산함. "예" 결정 989 호처럼 연합뉴스 · 강원일보 · 부산일보 등 3개사의 명예훼손을 한데 묶은 경우 각사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함.

② 하나의 결정속에 2개 항목 이상의 실천요강 저촉이 지적된 경우 이를 각각 하나의 계산단위로 취급했다.

세째,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 위반사례 중 제 1항의 위반건수는 72년의 유신체제 출범 이전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제 2항의 경우는 그와 대조적으로 72년 이후에 증대되었다. 네째,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위반에서는 제 2항 「미확인의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에는 그 미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과대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제 3항 「사실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모와 의미를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특히 사실의 요약과 표제에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제 5항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보도를 했을 때에는 스스로 즉각으로 이를 완전히 정정해야 한다」는 규정 등에 저촉된 사례들이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다.

## 미성년 피의자, 봉육한 부녀자의 성명 · 사진공개가 가장 많아

다음, 명예훼손으로 결정된 기사들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실천요강을 위반했다고 판정받게 되었는가를 년도별로 분석한 것이 <표 2>이다. <표 2>를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결정된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허위보도나 오보, 또는 과장보도로 명예훼손의 결정을 받은 기사는 65년 이전에서 결정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파적 보도로 저촉된 건수는 60년대 후반과 70년도 초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네째, 72년 유신체제실시 이전시기에서 허위보도·오보·과장보도·왜곡보도·저열한 표현·편파적 보도 등으로 명예훼손의 결정을 받은 기사가 많은 반면 72년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본실천요강 저촉추세와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보도나 오보 등은 모두 실천요강의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결정 이유 \ 연 도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
|--------------------------------------------------|----|----|----|----|----|----|----|----|----|----|----|----|----|----|----|----|----|----|----|----|---|
| 허 위 보 도                                          | 1  |    | 1  | 1  | 9  | 2  | 8  | 13 | 2  | 5  | 1  | 3  | 1  | 1  |    |    |    |    |    |    |   |
| 誤 報                                              | 2  | 2  | 1  | 5  | 2  | 4  | 1  |    |    |    |    |    | 1  |    |    |    |    |    |    |    |   |
| 과 장 보 도                                          | 1  | 2  | 1  | 4  | 3  | 5  | 2  | 12 | 1  | 2  | 1  |    |    |    |    |    |    |    |    |    |   |
| 歪 曲 보 도                                          | 1  |    |    |    | 5  | 2  | 1  | 4  |    |    | 1  |    |    |    |    |    |    |    |    |    |   |
| 저 열 한 표 현                                        |    | 1  | 2  | 4  | 2  |    | 2  | 4  |    |    | 2  |    | 1  |    |    |    |    |    |    |    |   |
| 편 파 적 보 도                                        | 1  |    |    |    | 2  | 1  | 2  | 1  | 3  | 1  | 3  | 3  | 1  |    |    |    | 1  | 1  |    |    |   |
| 프 라이 버 시 침 려                                     | 1  |    |    |    | 1  |    | 1  | 2  | 4  | 6  | 5  |    | 1  | 1  |    | 3  | 2  | 6  | 14 | 1  |   |
| 심천요강중 타인의 명예와 자유권 제4항 위반 사건과 무관한 사람 혹은 불필요한 신분공개 |    |    |    |    |    | 2  | 37 | 22 | 12 | 36 | 8  | 13 | 5  | 54 | 29 | 14 | 41 | 23 | 24 | 15 | 4 |
|                                                  |    |    |    |    |    | 3  | 2  | 1  | 8  | 17 | 13 | 6  |    | 22 | 25 | 20 | 12 | 4  | 2  | 8  | 8 |
| 기 타                                              | 1  |    |    | 1  | 2  |    | 1  |    |    | 1  | 7  | 2  |    |    |    |    |    |    |    |    |   |

1. 이 표는 영예훼손으로 「注意」이상의 決定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것임.
2. 이 표의 계산 단위는 <표 1>에 준했음.
3. 規定理由가 밝혀져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 표의 작성자가 規定文 全文을 읽고 理由를 판단했음.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決定」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이 표는 명예훼손으로 「주의」 이상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것임.
2. 이 표의 계산 단위는 <표 1>에 준했음.
3. 규정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 표의 작성자가 규정문 전문을 읽고 이유를 판단했음.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결정」 집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권침해(인격권침해)에 관련된 우리 나라 신문들의 보도성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허위보도나 오보, 또는 과장보도나 왜곡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70 년대에 들어오면서 크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70 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어디까지나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한정된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위보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현실적으로 분석표에 나타난 것처럼 70 년대 후반부터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같은 보도성향이 크게 근절되어온 경향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둘째, 신문이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성향은 60 년대 이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지속되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성향 역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보도성향은 신문윤리위원회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일괄적으로 결정되었지만 그 가운데 상당한 사례들은 프라이버시침해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선정주의의 근본이유는 상업주의에 기인

이렇게 볼 때 신문의 인권침해 원인은 자명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문이 왜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신분을 공개하게 되며 미성년의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봉육한 부녀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보도하게 되는가를 따져보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도성향의 원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의 선정주의라고 생각된다. 신문이 선정주의로 흐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업주의에 있다. 신문의 상업주의는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려 하기 때문에 신문은 선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은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폭격 · 섹스 · 모험주의 · 영웅숭배주의 등을 좋은 소재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소재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범죄기사이기 때문에 신문들은 범죄기사를 선정적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선정주의는 신문들 사이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더욱더 선정적이 된다. 그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사건에 끌어들여

보도하게 되고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보도기준」(67. 9. 6)을 어기며, 법원에서 범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정신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신문의 선정주의가 얼마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 1> 「노단상의 내연의 처 살롱 호스티스 · 접대부 등을 전전했고 어릴 때 가출해 윤락가를 무대로 껌팔이도 했다…… 영등포의 명동홀 · 코스모스살롱 · 서울회관 등을 전전하다 한달 전까지는 영등포 6가 맥주홀 「하정」의 「11번 아가씨」로 일했으나 5월 중순쯤 부근의 신라홀로 옮겨 6월 3일까지 일했다. 다른 아가씨들에 따르면 문은 얼굴이 예쁘고 수완도 좋아 외박손님이 많았다는 것」 (탈주범사건 보도기사 J일보)

「이씨는 1백 65cm의 늘씬한 체격에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졌다는데 어머니 강진호씨(63)환갑때는…… 조모씨(46)와 결혼, 27세까지 9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딸 현정양(13·S여중 2년)을 낳은 뒤 이혼했다…… 인현동 1가 131의 13셋집은 2개월 전 1천 2백만원 전세로 입주. 방 3개를 여인 3대가 하나씩 써왔다…… 또 수사경찰 및 이씨를 아는 사람들은 저마다 "백말띠는 역시 팔자가 센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자전화번호만 136명」이라는 제목을 단 H일보의 화장품점 경영 여주인 이씨의 피살사건보도기사. 81. 8. 16일자)

이 밖에도 최근의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보도나 원효로의 윤경화씨 피살사건보도에서 보듯이 피의자를 진범으로 단정한다거나, 피살자와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름을 밝히는 일로부터 사건과 무관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신분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액이니 또는 피살자가 낙태수술을 많이 했느니, 처녀가 아니라는 등 저속하고 저열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범죄사건보도기사가 선정주의에 빠져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일은 예사롭다.

**기자는 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문이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기자들의 직업적 자질 내지 직업적 관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제약을 크게 받는 신문이기 때문에 기사를 확인하고 검토할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오보나 허위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조건은 신문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으로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보나 허위보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제는 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직에 종사할 자질을 못 갖추었다는 말밖에 될 것이 없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자.

「몬트리올 ·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절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일 하오 5 시께 서울 중구 사보이호텔 커피숍에서 최씨의 친구 김철호 씨로부터 분말로 된 대마초 담배 반갑분을 얻어 나눠 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 크라운호밀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1 병을 마시고 크게 취한 상태에서 친구 7명과 함께 놀러온 조모양(29……)이 춤추러 나가며 7번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11 만 3 천원과 일화 1 천 1 백엔이 든 핸드백을 훔쳤다는 것. 구속된 양씨 등은 조양의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오륜금메달리스트 심정모씨 구속 " 표제의 6 단 기사 H 일보 81 년 4 월 4 일자)

이 기사는 양선수와 동명이인인 사람을 양선수로 잘못 보도한 기사였다. 이 신문은 그 다음날 같은 지면에서 충분한 크기의 지면을 할애하여 오보에 의한 양선수의 명예훼손을 보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따라서 신문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적절하게 취했다는 점에서 문제삼을 일은 못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보의 예에서 우리는 취재기자가 신중한 재확인 과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찰조사만 믿고 기사화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오보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재과정에서 정보를 재확인하지 않고, 또 자신이 쓴 기사를 다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오보나 허위보도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흔하다. 미성년자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봉육한 부녀자 등을 동일인으로 인지할 수 있게 성명이나 주소, 또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잘못을 계속 범하는 까닭의 하나도 한번 쓴 기사를 재검토하는 관행을 이행하지 않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인은 법,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언론이 인권을 침해하는 세번째 이유로 언론인의 법의식과 직업윤리의식의 박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식이 박약하다는 것은 비단 언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국민 전체의 규범의식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신장해야 할 처지에 있는 언론인들의 법의식은 일반국민들보다는 투철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인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직업윤리의식에 매우 충실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 적어도 언론계 스스로가 제정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는 직업윤리의식은 언론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된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신문기자들은 직업윤리의식이 그렇게 투철하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되풀이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중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 제 2 항과 제 4 항 및 용의자에 대한 「보도기준」 위반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직업윤리의식의 박약을 들어내주는 것이다. 피의자가 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하고 범인인 것처럼 신문재판을 하는 일도 모두 법의식이 투철하지 못한데서 초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신문기자들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향유하며, 법률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태도로, 자유와 존엄의 상태로 발전하게 할 기회와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 목적을 위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대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고려된다」는 조항이나 또는 「아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호와 구조를 받는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여 이에 충실하여야 하겠다는 직업윤리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미성년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기사는 쓸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정의 정신과 소년법에 저촉되어 심리중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성명 연령 · 직업 · 용모 등을 신문지 등에 게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동법 제 61 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타인의 명예와 자유」 제 4 항을 위반하여 명예훼손의 결정을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체로 신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못 배운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의 법의식도 박약하리라고 짐작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법익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인권침해 보도성향이 개선되는 데 자극을 주지못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므로 언론은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보다 더 성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직업윤리의식 발양에 대한 요청이라 하겠다.

### 언론의 책임을 묻는 통제장치가 필요

끝으로 언론의 인권침해 보도성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장치의 미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직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언론매체는 대중에게 직접 봉사하며, 반대로 대중은 언론인과 매체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사회적 통제장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매체위원회, 언론 옴부즈만의 제도화와 몇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동료집단들 사이의 비판기능을 수행할 「저널리즘 리뷰」 등과 같은 장치들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중요한 민주적 제도들이 공중에게 책임을 질 때에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은 지극히 중요한 민주적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에 종사하는 간부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중이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공중의 언론에 대한 여론이 언론의 관행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통제통로는 효능면에서 대단히 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중에 의한 언론통제장치를 개발해야 할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하겠다.

### 3. 맺는 말

1978년에 열렸던 유네스코 제 20 차 총회에서는 <평화와 국제이해를 강화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및 전쟁선동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기여에 관한 기본원칙선언>이라는 긴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략전쟁, 종족차별, 인종차별, 편견과 무지에서 배태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인간의 목표, 열망, 문화와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널리 퍼뜨림으로써 민족간의 무지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자국민을 타국민의 희망과 소망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며,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케 하는데 기여한다. 」

이 선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오늘의 언론은 폭넓게 인권을 존중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옹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는 이론의 앞에서 지적했듯이 광의의 시각에서 협조해 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는다. 인간은 그가 취한 권리는 물론, 부여받은 권리와 쟁취하지 못한 권리에 관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점을 언론은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그 자체가 인권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대행기관임을 언론 스스로가 자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은 인간에게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첫 과업은 모든 사람이 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소유하게끔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생생한 실체가 되도록 만들게 도와야 한다.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권을 알도록 돕고, 또 모든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가르칠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아무리 자기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자각한다고 해도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언론의 두 번째 중요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언론체계가 자체가 인권을 보호 · 존중해야**

언론이 이상과 같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체계가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가치체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가치체계에 기초를 둔 언론이라면 적어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가치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유네스코가 펴낸 는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정확성 및 인권의 존중과 같은 가치가 현재는 언론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고도의 직업적인 규범과 책임을 법률로 강요할 수도 없으며, 또 언론인들의 직업적인 업무수행을 개선할 수도 있는 기관에 고용된 개인 언론인들의 호의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언론인들의 자존심과 성실성과 수준높은 업적을 성취하면서 내면적인 동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스스로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인은 모든 곳에서 진실한 직업으로 인식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규범과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인들은 폭 넓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정한 전문직업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필요가 언론계 스스로에 의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독일의 하인리히 뵐의작품 가운데 언론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주제로 한 카타리나부롬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이 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저널리즘의 속물근성에 의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여론을 야기 시키는 무책임과 편파성에서 이루어질 때, 이에 관련된 개인은 바로 이 같은 언론의 희생자로서 사회적 생명을 상실 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이 소설은 카타리나와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언론의 횡포에 의해 몰락되어가는 과정을 여실히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70 년대의 신문연재소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언론인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강조되는 것을 보면, 기자란 좋은 친구가 없고 권력의 시녀로 타락한 청맹과니이며, 직업적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향응을 받는 것 등이다.

소설 속에 나타난 언론의 폭력과 언론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모든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은 스스로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자기 성찰과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언론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규범체계를 확고히 내면화시키고, 전문직업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1968. 공저) 「현대사회와 대중문화」(1975. 공저) 역서 「인류의 미래상」

-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